



의안번호

제36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1. 4. 1.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제36호
----------	------

제출연월일 : 2021. 4. 1.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 주민세 감면

- 감면대상 : 「지방세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세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1), 4)에 따른 2021년 주민세 전액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5만원
-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0만원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원
- 4) 그 밖의 법인 : 5만원

- 감면시기 : 2021년 8월
- 감면예상액 : 8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목	적 용 대 상	감 면 율	감 면 예 상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계			56,870	840		
주 민 세 (개 인 분)	개 인 세 대 주	1만원	50,089	501		
주 민 세 (사업소분)	개 인 사업자	세액 5만원이하 영 세 사 업 자	5만원	4,448	222	
	법 인 사업자			2,333	117	

※ 감면예상 건수와 금액은 2020년 주민세 부과건수와 금액임.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 감면대상

-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건축물,토지분)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단, 감면율은 최대 50%를 넘을 수 없으며, 최소 10% 이상으로 함)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단,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에 해당되는 자 간의 임대차 계약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제외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감면시기 : 2021년 7월 ~ 12월

○ 감면예상액 : 7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목	적 용 요 건	감면율	감 면 예 상 액		비 고
			건 수	금 액	
재 산 세 (건축물, 토지)	임대료 인하율이 50% 이상	50%	962	79	전체 상가의 5% 참여 예 상 시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 50% 미만	임대료 인하율			

※ 감면예상 건수는 2020년 재산세(상가부문) 부과건수 19,240건×5%

감면예상 금액은 2020년 재산세(상가부문) 부과금액 3,150백만원×5%×감면율(50%)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신청한 자에 한함

□ 지방세 감면에 따른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
- 지역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 을 지원하고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 촉진을 위한 지속적 참여 확산에 기여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